

인터넷으로 상품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광고회사가 미리 상품 주문을 하였거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제공회사의 기존가입자들에게 전자우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 1 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Cyber Promotions Inc. v. American Online Inc.
24 Med. L. Rptr. 2505 (미연방 펜실버니아 동부지방법원)

판시요지

컴퓨터온라인으로 상품판매촉진활동을 하는 영리적인 광고회사가 인터넷 상에서, 미리 상품주문을 하였거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정보제공회사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전자우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 1 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광고회사의 전자 우편 메시지는 인터넷 정보제공회사에 의하여 봉쇄되어 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정보제공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또 그 회사의 행위가 정부행위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개요

American Online Inc. (인터넷정보제공회사, 이하 AOL 또는 인터넷회사라고 함)는 Cyber Promotions Inc.(온라인으로 상품판매촉진활동을 하는 광고회사, 이하 Cyber 또는 광고회사라고 함)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1030) 위반, 계약관계의 고의적 방해, 장래적 계약관계의 불법행위적 방해, 불공정경쟁 등이었다. 이에 제소당한 인터넷회사는 위 광고회사를 상대로 또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상표 및 영업권 침해 또는 약화, 불공정경쟁, 허위 원산지 표시,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신청하였다. 위 양 소송은 병합되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미연방수정헌법 제 1 조(소위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한 회사가 다른 정보제공회사의 가입자에게 이들이 미리 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전자우편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유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 그 다른 정보제공회사가 자기의 가입자에게 그 광고가 도달하기 전에 그 전자 우편 광고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슈는 오늘날 대단히 시사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터넷은 막대한 분량의 정보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많은 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법원은 그 정보제공회사의 행위가 정부행위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면 정보제공회사는 광고수령을 원하지 않는 자기 가입자에게 인터넷으로 그 광고가 도달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1996. 1. 26. AOL 은 Cyber에게 미리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그 내용은 Cyber가 무분별하게 전자우편(e-mail)을 AOL의 가입자에게 인터넷으로 띄우는 것에 대하여 AOL이 대단히 분격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AOL은 결국 Cyber의 ISP(인터넷정보제공회사)에다가 전자우편을 파괴시키는 소위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s)을 보냈다. 이러한 AOL의 전자우편 폭탄 투여에 대하여 1996. 3. 26. Cyber는 AOL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AOL의 위 폭탄 투여에 의하여 Cyber의 ISP 중 두 회사가 Cyber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켰고 또 다른 ISP는 Cyber와 계약체결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컴퓨터 사기 남용방지법위반이고, 또한 고의에 의한 계약관계 방해이며, 장래적 계약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적 방해인 동시에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청구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AOL은 1996. 4. 8. 10개의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Cyber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보면 상표권 내지는 영업권의 침해 또는 약화, 불공정경쟁, 원산지 허위 표시, 허위 광고 등이다. 위 AOL 또한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이유(요약)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쉽게 인정된다. 즉 AOL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정보제공회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정부가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위 회사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정치적 조직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리고 위 회사의 가입자들 또는 구성원들은 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위 회사의 전자우편 체계에의 접근, 그리고 인터넷 연결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정보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 비슷한 다른 사적 회사들이 위 회사와 경쟁한다. 그리고 한편 Cyber의 광고전자우편의 내용은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체중 줄이는 법, 건강보조식품광고, 그리고 심지어는 폰섹스 서비스 광고도 있다. 한편 AOL은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주식정보제공, 어린이 오락, 뉴스 그리고 AOL의 비가입자들을 위한 전자우편의 발송 및 수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이 다른 사건, 즉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Reno, 929 F. Supp. 824(E.D. Pa.1996)에서 밝힌 선례가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통신은 개인의 가정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초대받지 않고서' 개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개 그 통신정보를 '우연'에 의해서 조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용과 달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은 일련의 적극적 단계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반 단계들은 대개 단순히 다이얼을 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기교적이고도 의도적인 행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미연방수정헌법 제 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즉 "미합중국의회는 특정종교를 숭배하게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헌법 조항의 해석권자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관된 판례를 내놓았다. 즉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오로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규제적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OL은 오로지 사적인 정보제공회사로서 그 주식을 정부가 단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AOL은 정부조직 또는 정치적 단체의 일부도 아니다. 또한 전자우편 폭탄 투여에 의한 정보차단행위라고 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AOL의 위 폭탄투여에 의한 정보차단행위를 위 수정헌법 제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Cyber는 위 폭탄투여에 의한 정보차단행위를 위 수정헌법 제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서 위와 같은 AOL의 행위는 정부행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볼 때 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즉 "개인 또는 사적 단체의 행위가 정부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개인 또는 사적 단체의 행위와 국가 간에 충분한 '관련'(nexus)이 있어 그 행위가 정부행위 자체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그러한 "관련성"에 관하여 3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 "그 사적 단체가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였는가 하는 점"(Exclusive public function test) 이고, 둘째 "그 사적 단체가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적 단체가 정부 공무원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정부 공무원과 협력하여 행위하였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 "정부가 지금껏 문제되는 행위자와의 상호의존관계 형성을 교묘히 암시하여와서 이제는 정부가 그 문제시되는 행위에의 합작참여자로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AOL은 정부의 배타적 특권에 해당하는 여하한 행위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다른 사건에서의 선례에 의하면, 정부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인터넷을 통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AOL은 오로지 많은 다른 영리적 정보제공회사 중의 하나로서 상호 경쟁하는 것에 불과한 개인회사일 뿐이다.

그리고 또한 Cyber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AOL의 인터넷 전자우편 접속은 이를 제외하고는 Cyber가 그 전자우편을 AOL의 가입자들에게 발송시킬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타적인 공공적 기능'이 된다고 하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Cyber는 그 자신의 광고를 AOL의 가입자에게 보낼 수 있는 다른 많은 대체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체적 수단 중의 하나를 예를 들자면 WWW(World Wide Web)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AOL의 가입자들도 Cyber의 전자우편을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인터넷이 아닌 다른 매체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미연방우편, 전화주문, 텔레비전광고, 신문, 잡지광고, 전단살포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AOL의 위 정보차단행위가 Cyber로 하여금 그 광고전자우편을 AOL의 다른 경쟁업체(예컨대 CompuServe, the Microsoft Network, Prodigy)의 가입자들에게 발송시키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위 정부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제 2, 제 3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보더라도 위 AOL의 행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여기서 굳이 하나 더 실시하자면, 위 AOL이 Cyber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다거나 또는 명백히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거나 집행관에 의하여 그 판결이 강제집행된다거나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AOL의 행위가 정부행위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만으로는 정부가 위 AOL의 행위와 협력관계 또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헌법이 연방헌법보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더 광범위한 보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버지니아 주헌법, 또는 펜실버니아 주헌법의 위 미연방수정헌법 제 1조에 상응하는 규정들에 의하여서 보더라도 Cyber가 위와 같은 AOL의 정보차단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AOL의 미연방수정헌법 제 1조에 관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이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 배심절차 등이 생략되어 약식으로 하는 판결임-역자주)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 법원은 Cyber가 위 미연방수정헌법 제 1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전자우편광고를 원치 않는 AOL의 가입자에게 발송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며, 따라서 AOL의 위 전자우편차단행위는 위 수정헌법 제 1조에 보장된 Cyber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Cyber는 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위 수정헌법 제 1조의 범위 외에 Cyber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다른 법리 주장을 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